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0. 6. 25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0년 6월 5일

나. 발 의 자: 고기관 의원 외 7명

다. 회부일자: 2020년 6월 9일

라. 상정일자: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
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(2020. 6. 19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고기관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자율방범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자율방범대의 설립·등록 등의 신고 방법을 정비함(안 제7조)
- 자율방범대의 경비지원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(안 제8조)
- 자율방범연합대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- 자율방범대의 지도 및 감독을 자율방범연합대에 위임하여 할 수 있도록 하

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(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임경태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선도 등 자율방범 활동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
 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 - 안 제7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설립·등록 및 해산 등 각종 신고 등에 대하여 자율방범연합대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8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과 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경비지원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9조에서는 자율방범연합대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,
 - 안 제10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지도 및 감독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음.
 - 검토결과,
 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경비지원 확대 및 구체화와 자율방범연합대의 활성화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선도 등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도모하고 지역단위의 안전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 - 다만, 자율방범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·운영하는 봉사 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한만큼 예산의 규모, 사용목적 등 명확한 집행기준을 마련하고, 지도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고기관 의원 대표발의)

의안	
번호	

발의년월일: 2020년 6월 일

발의자: 고기관 의원 외 7명

1. 제안이유

자율방범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자율방범대의 설립·등록 및 해산, 신고사항의 변경시 자율방범연합대를 거치도록 하는 등 설립·등록 등에 대한 신고 방법을 정비함(안 제7조)
- 나.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경비지원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(안 제8조)
- 다. 자율방범연합대가 방범대의 사업계획 수립, 경비지원의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범대의 활동지원에 관한

사항을 세분화하는 자율방범연합대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
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
라. 자율방범대의 지도 및 감독을 필요시 자율방범연합대를
거쳐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(안 제10조)

3. 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『지방자치법』 제22조,

『자원봉사활동기본법』 제4조 및 제7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반영

다. 입법예고 : 2020. 6. 1. ~ 6. 5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1항 중 “신고서(이하 “신고서”라 한다)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”를 “신고서(이하 “신고서”라 한다)를 연합대를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미신고 방범대는 지원금을 제한할 수 있다.”로,

제7조 제3항 중 “지체 없이 구청장에게”를 “지체없이 연합대를 거쳐 구청장에게”로 한다.

제8조 제1항 본문 중 “필요한 경비 등을”을 “다음 각 호의 경비를”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복장 및 장비 구입비
2. 자율방범초소의 설치·수리비
3. 야간근무활동을 위한 식비
4. 상해보험 가입비
5. 범죄예방 및 치안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
6. 그 밖에 구청장이 연합대 및 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제8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연합대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제9조의 제목 “**자율방법연합대**”를 “**자율방법연합대 구성과 기능**”으로 하고,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연합대는 방법대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방법활동을 지원한다.

⑦ 연합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법대의 경비지원 범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.

제10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연합대를 통하여 할 수 있다.

제10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구청장은 연합대 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연합대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신고 등) ① 방법대를 설립·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율방법대 설립·등록 신고서(이하 “신고서”라 한다)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방법대의 대표자는 방법대가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<u>지체 없이</u>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</p> <p>제8조(경비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방법대(외국인 자율방법대 포함)의 원활한 활동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<u>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</u>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7조(신고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<u>신고서(이하 “신고서”라 한다)</u>를 연합대를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u>미신고 방법대는 지원금을 제한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지체 없이</u> 연합대를 거쳐 구청장에게 -----.</p> <p>제8조(경비 지원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<u>다음 각 호의 경비를</u>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복장 및 장비 구입비</u> 2. <u>자율방법초소의 설치·수리비</u> 3. <u>야간근무활동을 위한 식비</u> 4. <u>상해보험 가입비</u> 5. <u>범죄예방 및 치안교육 등에</u>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, 소속 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, 제10조에 따른 지도·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9조(자율방법연합대)

① (생략)

② (생략)

③ (생략)

④ (생략)

⑤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제10조(지도 및 감독)

① (생략)

② 구청장은 방법일지(별지 제4호 서식) 작성 및 활동실적을 반기별로

필요한 경비

6. 그 밖에 구청장이 연합대 및 방법대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②-----

-----.이 경우 연합대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자율방법연합대 구성과 기능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연합대는 방법대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방법활동을 지원한다.

⑦ 연합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법대의 경비지원 범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.

제10조(지도 및 감독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
지도·점검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----- 이 경우 연합
대를 통하여 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연합대 활동이 원활
하지 않은 경우 연합대를 거치지
아니할 수 있다.